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9. 12.(수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
담당 부서	교통안전 복지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정수, 사무관 오한영, 주무관 홍성욱 • ☎ (044) 201-3863, 3864
보 도 일 시		2018년 9월 1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12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우수탁 차주 직접 신청하고 받는다 보조금 신청 기한·절차 개선...업계 건의·애로사항 적극 수렴 반영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버스,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(LDWS: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)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하였다.
 - 현재 정부가 '18~'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(한도 50만원)의 일부(80%)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, 위·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,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·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.
 - 이에 따라 버스, 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하고, 각 지자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.
- 먼저, 그간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 위·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하였는데,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·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,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·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.

○ 또한,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(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내)하고,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화*하였다.

* (성적서) 모든 부분 제출에서 앞 표지(시험기관 직인과 모델명 명시)만 제출로 같음 (장착 사진) 번호판 확인되는 차량 전면 사진, 장치 장착 확인되는 내부 사진 각 1장


□ 한편,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**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'19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** 각종 경영·서비스 평가, 우수사업자 선정 등 추진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반영하고, **교통안전점검(지자체, 교통안전공단 등)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일선 현장에서 확인·계도할** 예정이다.

*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우, '19년 상반기 수학여행시즌 전까지 장착 완료

□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,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, 공제료 인하(화물 공제 3% 인하) 등 **조기 장착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 홍보할** 계획이다.

○ 또한, 연내 예정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*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지자체 및 운수업계에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보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.

* 20톤 초과 화물·특수차 중 4축 이상, 특수용도형, 구난형·특수작업형 추가

 공공누리 공경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오한영 사무관(☎ 044-201-386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

구분	현행	변경
보조금 신청 및 지급 대상	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음	위·수탁 화물차량의 경우 위·수탁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지급 * 다만,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인지를 위해 운송사업자 신청은 유지하고, 운송사업자가 위임시 위·수탁 화물차주가 대리 신청 가능
보조금 신청 기한	'19.11.30 이전	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조건 추가 * 이전 장착자는 업무처리지침 변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,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지연시에는 예외
보조금 신청 서류	물리규격·성능인증 성적서 모든 부분 제출	물리규격·성능인증 성적서 중 앞 표지 (시험기관 직인과 장치 모델명 명시된 경우)만 제출
	장착사진관련 구체적 기준 없음	차량번호판이 확인될 수 있는 차량 외부 전면 사진 1장,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내부 사진 1장
보조금 회수 예외 요건	자동차 교체로 인한 장착 차량 변경, 사고 및 도난, 천재지변 등	차령말소 로 인한 경우 추가